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예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김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자택 본인 거주 중인 자택 주소 기입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없을 시 생략)				
	직장명	휴대전화번호: 본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본인 메일주소				
		우편물 수령: [v]자택 []직장 []직접수령				
		신청등급	[]1급	[v]2급		
최종학력	구분	기간	학교명	전공명		
	[] 대학원(박사)					
	[] 대학원(석사)	[2020.00.00.]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과		
[] 대학	[2020.00.00.]까지					
[v] 전문대학						
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	[v] 교과목이수학교	[] 대학원(석·박사)	[] 대학	[] 전문대학	[v] 평가인정 학습과정	기타([])
	필수 교과목	[v] 사회복지학개론	[v]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v] 사회복지실천기술론		
		[v] 사회복지실천론	[v] 사회복지정책론	[v] 사회복지조사론		
		[v] 사회복지행정론	[v] 사회복지현장실습	[v]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v]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교과목	[v] 가족복지론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교정복지론		
		[] 국제사회복지론	[] 노인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문제론		
		[] 사회복지장론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v] 아동복지론			
[v]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v] 장애인복지론		[v] 정신건강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v] 청소년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간	실습기관	기관실습 지도자	실습세미나 교수	
	[2020.00.00.]부터 [2020.00.00.]까지	○○복지기관	김○○	김○○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v])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20년 0월 0일

신청인

김 ○ ○ (서명 또는 인)

한국 사회복지사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만원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cm×4cm) 2장	

210mm×297mm [백상지 80g/㎡]

▶ 최종학력 [메모:1]

-구분
본인의 현재 보유 최종학력 체크

-기간
[]부터, []까지 기입방법:
사회복지 처음 공부한 일자부터
종료한 일자까지로 기입

-학교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입
(패스원평생교육원 등 개별교육
기관명으로 작성하면 안 됨)

-전공명
본인이 취득한 전공 '학과명' 으
로 기입

▶ 교과목이수학교 [메모:2]

고졸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받으며 (학점은행제)교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평가인정학습과정 체크

▶ 필수교과목 [메모:3]

모두 선택되어있어야 함

▶ 사회복지법정교과목이수여부 [메모:5]

: 개정기준 교과목 중 동일 인정
교과목에 체크
'사회복지법제' 이수자 → '사회복
지법제와 실천' 체크
'사회복지개론' 이수자 → '사회복
지학개론' 체크
'가족상담및치료' 이수자 → '가족
상담및가족치료' 체크
'사회복지발달사' 이수자 → '사회
복지역사' 체크
'의료사회사업론' 이수자 → '의료
사회복지론' 체크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이수자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체크
'청소년복지' 이수자 → '청소년복
지론' 체크
'학교사회사업론' 이수자 → '학교
사회복지론' 체크

▶ 선택교과목 [메모:4]

본인이 수강하여 이수완료한 선
택교과목 체크